

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

50 $\frac{1970}{2020}$

KOREA
CUSTOMS SERVICE



관세청
Korea Customs Service

목 차

중소·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의 제고

① 중소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	p.1
②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	p.2
③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	p.3
④ 잠정수출신고 대상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추가 및 가격확정신고 기간 연장	p.4
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요건 삭제	p.5
⑥ 중소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	p.6
⑦ 보석의 원석(原石) 및 나석(裸石)의 특정물품 면세대상 추가	p.7
⑧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	p.8
⑨ 해저광물자원개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	p.9
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	p.10
⑪ 맥주, 탁주에 대한 주세율 변경	p.11
⑫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	p.12
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환원	p.13

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업체의 납세부담 완화

⑭ 협정세율 적용 우선 순위 개선	p.14
⑮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기한 연장	p.15
⑯ 원산지증빙서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	p.16
⑰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명확화	p.17
⑱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대상 확대	p.18

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

⑲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	p.19
⑳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	p.20
㉑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	p.21
㉒ 국제경기대회 물품의 재수입 면세대상 추가	p.22
㉓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	p.23
㉔ 수정신고 및 보정신청 시 포괄신고 대상 확대	p.24

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

25	밀수출입 예비범에 대한 몰수·추징 근거 신설 및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 확대	p.25
26	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부과 및 위반시 관세포탈죄 적용	p.26
27	관세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	p.27
28	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	p.28
29	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	p.29
30	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	p.30
31	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	p.31
32	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신설	p.32

1 중소기업 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검사장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·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 • <u>< 신설 ></u>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중소·중견기업의</u>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• 다만, 국가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*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 지원 가능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
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< 신설 ></u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<u>일부 위탁</u>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*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필요경비 지원 가능 * 신청서 접수,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

○ (기대효과)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173조 및 제329조 개정)

②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<u>제 246조(물품의 검사)에 따른</u>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	<p>□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<u>관세법에</u>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

○ (기대효과) 관세법에 규정된 모든 물품검사로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관세법」 제246조의2 개정)

③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 영인과 다를 경우 • < <u>신 설</u> > 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<u>확대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• <u>검사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</u>

○ (기대효과)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수수료 폐지로 인한 수출기업 지원

○ (시행일) '20. 4. 1.(「관세법」 제247조 개정)

4. 잠정수출신고 대상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추가 및 가격확정 신고 기간 연장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잠정수출신고 대상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. 가스 • 2. 액체 • 3. 전기 • 4.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• 5. HS 제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• 6.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• < 신 설 > <input type="checkbox"/> 가격 확정 신고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재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하기 전까지 	<input type="checkbox"/> 잠정수출신고 대상 물품 <u>추가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• <u>전자상거래 수출물품</u> <input type="checkbox"/> 가격 확정 신고기간 <u>연장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재완료일로부터 <u>180일</u>이 경과 하기 전까지

○ (기대효과) 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지원 및 수출정정 부담 완화

○ (시행일) '19. 12. 31.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5조 개정

5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요건 삭제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함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<u>신고 요건 삭제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< 삭제 ></u>

○ (기대효과)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활성화

○ (시행일) '19. 12. 31.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삭제

6 중소기업·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시설재 관세 감면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 보세공장이 제조·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<u>기계 및 장비</u>로서 <u>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</u>에 대한 관세 경감

○ (기대효과)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이용률 제고 및 가공무역 지원

○ (시행일) '20. 4. 1.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)

* 적용기한 : '22. 12. 31. 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

7 보석의 원석(原石) 및 나석(裸石)의 특정물품 면세대상 추가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물품 면세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신 설 > 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물품 면세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석의 원석(原石) 및 나석(裸石) 추가 *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
○ (기대효과) 보석 가공 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

○ (시행일) '20. 4. 1.(「관세법」 제93조제18호 신설)

8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지금* 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* 금괴(덩어리)·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.5%이상인 금 적용기한 : '19. 12. 31.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<u>기한 연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 좌 동 > 적용기한 : '21. 12. 31.

○ (기대효과) 금 밀수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 개정)

9] 해저광물자원개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관세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·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·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• 적용기한 : '19. 12. 31.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관세면제 <u>기한 연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• < 좌 동 > • 적용기한 : '22. 12. 31.

○ (기대효과) 적극적인 국내대륙붕 개발을 통해 석유 및 석유가스 자급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도모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0조 개정)

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·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,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: '19. 12. 31. 	<p>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<u>기한 연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 좌 동 > 적용기한 : '21. 12. 31.

○ (기대효과)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중소·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8조 개정)

11 맥주, 탁주에 대한 주세율 변경

(심사정책과, 042-481-77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·탁주 과세표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입신고 <u>가격</u> 	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·탁주 과세표준 <u>변경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입신고 <u>수량</u>
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·탁주 세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탁주 : 5% 맥주 : 72% 	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·탁주 세율 <u>변경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탁주 : <u>41.7원 / 리터</u> 맥주 : <u>830.3원 / 리터</u>
<input type="checkbox"/> < <u>신 설</u> >	<input type="checkbox"/> <u>생맥주</u> 세율 경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대상)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 (세율) 664.2원 / 리터 * 맥주 세율의 20% 경감 (적용기한) '20. 1. 1. ~ '21. 12. 31.

○ (기대효과)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

○ (시행일) '20. 1. 1 시행(「주세법」 제21조 및 제22조 개정)

1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

(심사정책과, 042-481-77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08.12.31. 이전 신규등록(최초등록)된 노후 경유차를 '18.6.30.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•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,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 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요건 <u>연장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<u>09.12.31.</u> 이전 신규등록(최초등록)된 노후 자동차를 '<u>19.6.30.</u>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• 노후 <u>자동차</u>를 말소등록하고,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(<u>경유차 제외</u>)를 구입하여 등록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제혜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별소비세 등 70% 감면 (한도 143만원*) * 경감한도 : 개별소비세 100만원, 교육세 30만원, 부가세 13만원 -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제혜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- 노후 <u>자동차</u> 1대당 신차 1대 지원
<input type="checkbox"/> 시행기간: '19. 1. 1.~'19. 12. 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시행기간: '20. 1. 1.~'20. 6. 30.

○ (기대효과) 노후 자동차 교체 지원

○ (시행일) '20. 1. 1.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9조의2 개정)

※ '20. 1. 1.~ 6. 30.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

13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환원

(심사정책과, 042-481-77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: 3.5%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<u>적용기한 만료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: <u>5%</u>

○ (기대효과)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탄력세율 적용의 환원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제6호)

14 협정세율 적용 우선 순위 개선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협정관세의 세율이 「관세법」에 따른 적용세율 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의 세율을 우선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만, 덤핑방지·상계·보복·긴급·특정국물품 긴급·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 <p>□ 협정관세의 세율이 「관세법」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「관세법」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< 신 설 ></u> 	<p>□ < 좌 동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만, 덤핑방지·상계·보복·긴급·특정국물품 긴급·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·<u>공중도덕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</u>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 <p>□ < 좌 동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만, <u>협정관세의 세율이 「관세법」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</u>

○ (기대효과) 조정관세의 실효성 강화 및 납세자의 FTA 협정세율 선택권 보장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5조 개정)

15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기한 연장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</p> <p>• <u>< 신 설 ></u></p>	<p>□ < 좌 동 ></p> <p>• 다만, <u>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 신청을 허용</u></p>

○ (기대효과) 납세자의 FTA 협정세율 적용 권리구제

○ (시행일) '20. 4. 1.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9조 개정)

16 원산지증빙서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<u>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</u> 세액정정·세액보정 신청, 수정신고 또는 <u>경정청구를 하여야 함</u></p> <p>□ 경정청구 및 납세신고세액 과다시 세액정정을 <u>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</u></p>	<p>□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<u>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</u> <u>세액정정·세액보정 신청,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,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할 수 있음</u></p> <p>□ 경정청구 및 납세신고세액 과다시 세액정정을 <u>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폐지</u></p>

○ (기대효과) 납세자의 FTA 협정세율 적용 권리구제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제46조 개정)

17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명확화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: 2,000만원 이하의 벌금	<input type="checkbox"/> < 좌 동 >
<input type="checkbox"/> <u>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: 300만원 이하의 벌금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실로 <u>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: 300만원 이하의 벌금</u>

○ (기대효과)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으로 법적 혼선 방지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개정)

18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대상 확대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발행한 품질 인증서 등을 관세청장이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개 기관이 품질 인증한 1,146개 품목의 생산자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발행된 15종의 인증서를 수출자에게 제공시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 <u>< 신 설 ></u>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 좌 동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 좌 동 > <u>제주특별자치도청이 원산지상품으로 확인한 품목 및 이에 대한 인증서를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추가 인정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급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청 인정서류 :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서 품목 : 47개 제주 지역특산품

○ (기대효과) 지역특산품의 FTA 활용 수출 증대

○ (시행일) 「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 이후

※ 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 서식16 신설

19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1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보호관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자격) 관세·법률·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※ 단, 세관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외 • (직무)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총괄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설치) 관세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설치 • (구성) 18명 이내의 위원(위원장 1명 포함) • (심의대상) ①관세조사범위 확대, ②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, 중지 요청 등 불복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설치)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(1차 세관, 2차 관세청) →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→ 결과 통지

○ (기대효과)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118조의2 ~ 제118조의5 신설)

20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범칙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통고처분 면제 가능 • 면제 대상 - 1), 2) 모두 충족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벌금 해당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) 몰수품 가액과 추징금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

○ (기대효과)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는 관세범인의 부담을 경감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관세법」 제311조 개정)

21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보세관 매장에서 물품 판매 가능

○ (기대효과) 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효과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196조 개정)

22 국제경기대회 물품의 재수입 면세대상 추가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수입 면세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박람회, 전시회, 품평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물품 • < 신 설 >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수입 면세대상 <u>추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• <u>국제경기대회</u>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물품

○ (기대효과) 국제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일시 반출하는 운동관련 물품 등에 대해 재수입 면세를 함으로써 원활한 국제경기 대회 및 행사 지원

○ (시행일) '20. 4. 1.(「관세법」 제99조 개정)

23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

(세원심사과, 042-481-787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분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납부고지 전 : 납부불성실가산세(㉠)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납세액 ×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) × 1일 0.025% • (납부고지 후 : 가산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미납세액 × 3%)(㉡) + 매 1개월마다 월 0.75%(㉢) 	<p>□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</p> <p>① <u>지연이자 성격(㉠+㉢)은 통합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납세액 ×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납부일) × 1일 0.025% <p>② <u>체납에 대한 재재(㉡)는 유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납세액 × 3% <p>※ 「국세기본법」, 「국세징수법」이 이미 개정('18.12.31)됨에 따라, 내국세와 관세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관세법」 및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개정</p>

○ (기대효과)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납세협력 기대

○ (시행일) '20. 1. 1(「관세법」 제41조 삭제, 제42조 개정,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개정)

※ 이 법 시행 전 납세신고분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

24 수정신고 및 보정신청 시 포괄신고 대상 확대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1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신고세액 변경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 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 상 : 수정신고, 보정신청 - 최초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 장에게 각각 변경신고 • 예 외 : 포괄신고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수정신고 - 통관지 세관 수개 인 경우,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변경신고 - < 신 설 > 	<p>□ 신고세액 변경 방법 <u>간소화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• 예 외 : 포괄신고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수정신고, <u>보정신청</u> - < 좌 동 > -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가 정산 결과 등에 따라 부족세액을 보정 신청·수정 신고하는 경우, 정산 담당 세관에 일괄 변경신고 허용

○ (기대효과)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부 편의 제고

○ (시행일) '19. 12. 26.(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10조제2항
및 제11조제1항 개정)

25 **밀수출입 예비법에 대한 몰수·추징 근거 신설 및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 확대**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11 /국제조사팀, 02-510-163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밀수출입에 대한 몰수·추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필수적 몰수·추징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입 금지물품의 밀수출입한 자 (소유·점유 무관) - 물품을 미신고 수입한 자 - 물품을 허위신고로 수입한 자 - 밀수품을 취득한 자 ●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신고·허위신고 <u>수입물품</u> 중 해당물품 · 보세구역에 반입신고 후 반입한 외국물품 ·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· <u>< 신 설 ></u>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밀수출입에 대한 몰수·추징 <u>대상 확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필수적 몰수·추징 대상(<u>예비법 포함</u>)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좌 동 ></p> </div> ●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신고·허위신고 <u>수출입물품</u> 중 해당물품 · <u>< 좌 동 ></u> ·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<u>규정에 따른 폐기물</u> · <u>그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</u>

- (기대효과) - 밀수행위 억제 및 밀수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적 차단
 -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 개선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관세법」 제282조 개정)

26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부과 및 위반시 관세포탈죄 적용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관세의 연대납세의무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: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- < 신 설 > <p>□ 관세포탈죄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	<p>□ 관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<u>구매대행업자 추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 좌 동 > - <u>화주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,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: 구매대행업자</u> <p>□ 관세포탈죄 대상에 <u>구매대행업자 추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<p><u>(화주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의 세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자 포함)</u></p>

○ (기대효과)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등 관세탈루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강화 및 소비자 권리보호 기여

○ (시행일) '20. 4. 1.(「관세법」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신설, 제270조 개정)

27 관세 고액·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

(세원심사과, 042-481-787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				
<p><신 설></p>	<p>□ <u>관세 고액·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자) 관세청장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해 검사에게 감치 신청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감치 신청 요건></p> <p>① 관세(내국세 포함) 3회 이상 체납,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, 합계 체납금액 2억원 이상</p> <p>②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</p> <p>③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</p> </div> • (감치 신청 이후 절차)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를 결정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table border="1" style="display: inline-table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위원회 의결</td></tr> </table> → <table border="1" style="display: inline-table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관세청장 감치 신청</td></tr> </table> → <table border="1" style="display: inline-table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검사 감치 청구</td></tr> </table> → <table border="1" style="display: inline-table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법원 감치 결정</td></tr> </table> </div> • (기본권 보호 조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치 신청 전,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-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 불가 <p>※ ‘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’(19.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)에 따라 「국세징수법」 및 「관세법」 개정</p>	위원회 의결	관세청장 감치 신청	검사 감치 청구	법원 감치 결정
위원회 의결					
관세청장 감치 신청					
검사 감치 청구					
법원 감치 결정					

○ (기대효과)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

○ (시행일) '20. 1. 1 시행(「관세법」 제116조의4 신설)

※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

28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*를 고시로 운용</p> <p>*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 물품을 판매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제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판매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된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의무 부과 ● 국외반출 여부 확인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권한 부여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현장인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현장인도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현장인도 제한 ●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

○ (기대효과) 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 한 내국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근절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196조의2 신설)

'21. 1. 1.(「관세법」 제277조 개정)

29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HS 87류 중고차 • < 신 설 > 	<p>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<u>대상 추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• <u>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(HS 3915호 품목) 및 생활 폐기물 등(HS 3825호 품목)</u>

○ (기대효과) 폐플라스틱 불법수출 차단을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

○ (시행일) '19. 12. 31.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 11 개정

30 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4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무부처의 요청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만 안전성 검사 실시</p> <p>* 주무부처의 선택에 따른 협업검사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에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</p> <p>*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은 세관장과 공동으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 시행 요청 가능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제226조(허가·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)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·승인·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·승인·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, 확인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/div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<u>공항·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</u> 근거 마련</p> <p>* 인천협업검사센터('16.1~), 부산협업검사센터('20. 상반기 예정)</p>
<p>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</p>	

○ (기대효과) 국민안전과 권리보호 확대 및 운영효율성 제고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246조의3 개정)

3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산정에 사용하는 매출액 기준</p> <p>• 보세판매장의 <u>매장별 매출액*</u>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</p> <p>* 세관신고 매출액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 <u>구체화·명확화</u></p> <p>• <u>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</u>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 적용</p>

○ (기대효과)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기준 명확성 확보

○ (시행일) '20. 1. 1.(「관세법」 제176조의2 개정)

32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신설

(특수통관과, 042-481-78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“보세운송업자등”)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세운송업자 -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화물운송업자 - 외국무역선 등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- 외국무역선 등에 선용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-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- 외국무역선 등에 서류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- <u>< 신 설 ></u>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업자등에 <u>구매대행업체 추가</u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2em;">< 좌 동 >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u>

○ (기대효과)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하는 제도 마련

○ (시행일) '21. 7. 1.(「관세법」 제222조 개정)